

[감정서쟁점] 컴퓨터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분쟁, 영업비밀침해 사안의 형사재판 중에 한  
국저작권위원회의 소스코드 감정서의 증거능력 및 소송실무: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2.

## 15. 선고 2016노3163 판결



### 1. 피고인의 감정신청 but 감정서에 대한 증거조사 흠결 등 위법사유

- (1) 형사재판 중 기술유출 혐의자 피고인의 감정신청
- (2)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수행 결과 '3D 스캐너 프로그램 감정서' 법원에 제출
- (3) 법원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및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위와 같이 감정결과가 도착되었음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음
- (4) 이에 대해 검사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모두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만 진술함
- (5) 검사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모두 위 감정서를 별도의 서증으로 제출한 바 없음 (따라

서 증거서류 등 목록에도 표시되지 아니하였음)

(6) 이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에 따른 증거조사 절차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 없음

(7) 그럼에도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를 그 증거로 설시함. (피고인이 신청한 감정서가 피고인의 혐의인정 증거로 사용된 상황)

## 2. 항소심 판결 요지

### 가. 법리

감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감정서는 감정인의 공판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게 되므로

(1) 별도의 서증으로 제출받아 증거서류 등 목록에 표시하고, (2)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물은 후 (3) 부동의하면 감정인신문을 하고 (4)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.

### 나. 구체적 사안의 적용 및 판단

제1심 법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'3D 스캐너 프로그램 감정서'가 증거로 제출된 바 없  
어 증거조사를 한 바 없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실시함으로써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 
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.

그러나,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'3D 스캐너 프로그램 감정서'를 새  
로이 증거로 제출하고,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함에 따라 항소심은 새로  
이 위 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다.

이로써 제1심의 위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었고, 이는 제1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 
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, 이러한 점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.

경업금지, 전직금지, 영업금지, 영업비밀, 형사고소, 민사소송, A~Z 수행경력

---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